

#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680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9월 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“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”은 아이돌보미의 현황 분석,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과 사후관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기관임.
-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

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

2) 위탁기간 : 3년(2022.1.1. ~ 2024.12.31.)

3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
-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(여성가족부 지침, 광역거점기관)

- 추진 필요성

-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돌보미 전문교육 지원, 현황관리 및 노무상담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) 위탁사무

-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및 점검 등
- 서울시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원
- 아이돌보미 교육 관련 업무지원
-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
- 사업운영실적 분기별 중간점검 분석보고서 작성·제출

-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참여
- 평가하위 10% 기관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
-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#### 5) 위탁시설 개요

- 운영목적 :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관할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분석·조정·서비스 질 관리
- 운영방법 :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위탁
- 시설규모 : 기존 사무실 등 공동 활용
- 인력배치 : 7명(광역거점 3명, 모니터링단 4명)
- 자격요건
  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준함
    - ※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2급 이상 등 아동양육 지원 사업 분야 학사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
  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으로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자 우대

6) 수탁기간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7) 소요예산 : 320,105천원('21년 기준)

### 3. 참고사항

## 가. 관계법령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, 방과후 서비스,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.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지원)
 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, 제6조 제1호 및 제9호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(2012.9.) 후 6년<sup>1)</sup>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<sup>2)</sup>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<sup>3)</sup>을 추진하고자,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<sup>4)</sup>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및 점검 등
- 서울시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원
- 아이돌보미 교육 관련 업무지원
-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

1) 위탁기간 2019.1.~2021.12.사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(2019.3.28.)되어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이 제출됨.

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 3. 25.>  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 3. 28.>

-이하 생략-

3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4)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(여성가족부 지침, 광역거점기관)

- 사업운영실적 분기별 중간점검 분석보고서 작성·제출
-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참여
- 평가하위 10% 기관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
-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## 2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사업 개요

### □ 사업 개요

- 서울특별시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은 아이돌보미의 현황분석,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돌봄서비스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 ‘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(여성가족부 지침)’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.

#### <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경과>

-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
- 위탁법인 :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
- 위탁기간 : 2019.1.1.~2021.12.31.(3년)
- 운영인력 : 총 7명(광역거점 3명, 모니터링단 4명)
- 소요예산 : 320,105천원('21년 기준 국:시비매칭 30:70, 시비100 추가)
- 추진경과
  - 1차 : 2011.3.17.~2011.12.31.(9개월,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)
  - 2차 : 2012.1.1.~2012.12.31.(1년,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)
  - 3차 : 2013.1.1.~2015.12.31.(3년,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)
  - 4차 : 2016.1.1.~2018.12.31.(3년,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)
  - 5차 : 2019.1.1.~2021.12.31.(3년,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)

- 2021년 예산액은 320,105천원이며, 6월말 기준 132,499천원을 집행하였으

며,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종사자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.

<연도별 예산집행 현황>

구분	예산액 (천원)	집행액 (천원)	집행잔액 (천원)	집행률 (%)	비고
2019년	285,360	270,117	15,243	94.6	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
2020년	322,249	281,097	41,152	87.2	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종사자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
2021년(6월말)	320,105	132,499	187,606	41.3	-

- 민간위탁 성과보고서<sup>5)</sup>에 따르면 센터 운영의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,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이 미진 행 되었고,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며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‘적정’을 통보 받음.
-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인 서비스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및 점검,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원,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실적은 2020년에 대부분 100%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, 2021년은 6월말 기준 50~100%의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함.

<연도별 목표(계획) 대비 실적>

연도별	구분	목표	실적	달성률(%)	
2021년 (6월말)	서비스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, 실태점검	실무자 간담회	연 4회 (100명)	연 1회	25
		사업 문의사항 응대	연 120건	연 105건	87.9
	아이돌보미 현황 파악	교육 수요조사	연 3회	연 2회	66.7

5)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. 5억원 미만 사무로 종합성과 평가 미대상임.

연도별	구분	목표	실적	달성률(%)	
	및 관리지원	교육운영현황 점검	연중 수시	연중 수시	-
		교육기관 운영지원	연중 수시	연중 수시 (연 125건)	-
		교육기관 실무자 간담회	연 3회 (30명)	연 1회	33.3
		교육기관 모니터링	연 10회	연 8회	80%
		우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강사 활용	연중 수시 (3명)	-	-
		우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강의 모니터링	연 2회	-	-
		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관리	연 4회	2회	50
		월별 실적 보고	연 12회	연 6회	50
		코로나19 현황보고	연중 수시	123회	-
	사업운영실적 작성·제출	서울시 분기보고	연 4회	연 1회	25
		한국건강가정진흥원분기보고	연 3회	연 2회	66.7
	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	전화, 모바일 모니터링	연 900건	6,496건	67.67
		현장 모니터링	연 900건	80건	8.33
		전화모니터링 건의·개선사항 발송	연 1회	-	
		전화모니터링 건의개선사항 사후조치 결과 취합	연 1회	-	
		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발송	연 12회	연 6회	50
		모니터링 피드백 사후조치결과 취합	연 12회	연 6회	50
		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보고	연 12회	연 6회	50
		아동학대 예방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	월 1회	연 1회	신도시 구축
		아동학대사례관리 전담인력 간담회	연 4회 (100명)	연 1회	25
연간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		연 1회	연 1회	100	
연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	연 1회	-			
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참여 지원	연 1회	-	-		
평가 하위기관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	서비스제공기관 현장 방문	연 1회	-	-	
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지원	연중 수시	연중 수시	-		

연도별	구분	목표	실적	달성률(%)	
	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	홍보물품 제작	연 1회	-	-
		리플릿 제작	연 1회	연 1회 (1720부)	100
		온라인 홍보	연중 수시	연 67회	-
		홍보물 배포	연중 수시	연중 수시 (310건)	100
		상호존중수칙 배포	연 1회	연 1회 (956건)	100
		보도자료 취합	연중 수시	연중 수시 (51건)	100
	기타 자제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, 중앙기관업무 협조 등	여성가족부 요청자료	연 12회	24	200
		서울시 요청자료	연 120회	78	65
		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요청자료	연 28회	10	35.7

<만족도 조사 결과 및 피드백 실적>

구분	응답가구수	아이돌보미 직무			서비스 안내		
		만족	보통	불만족	만족	보통	불만족
2019년	18,445	97.96	1.66	0.39	96.35	2.45	1.17
2020년	18,121	98.02	1.71	0.27	96.64	2.93	0.43
2021년 (1~6월)	6,496	98.32	1.54	0.14	97.74	2.02	0.25

-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주요 성과로는 서울시 아이돌보미 양성, 보수교육 운영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통합 관리를 도모했으며, 보완과제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 강화가 있음.

<주요 성과평가 결과>

주요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울시 아이돌보미 양성, 보수교육 운영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통합 관리 도모</li> <li>• 정기적 실적보고를 통한 서울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현황 파악 및 공유</li> <li>• 코로나19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가능</li> <li>•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사업 운영(간담회,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등)</li> </ul>
----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온라인 사업 홍보 강화(인스타그램, 블로그, 패밀리서울 활용)</li> </ul>
보완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의 평가하위 10% 해당 기관에 대한 컨설팅 강화</li> <li>•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아이돌보미 요구사항에 대응한 노무 상담 등 역할 확대</li> </ul>

###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은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, ‘2021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(여성가족부)’에 의한 위탁사무임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6)에 따르면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.
- 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‘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’은 2012부터 2018년까지 지정위탁,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개모집(재위탁) 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,
- 해당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, 아이돌보미서비스 수요 및

6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아이돌보미 활동 상황 분석·조정,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는 시장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-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의 운영 사무는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지원, 모니터링, 중앙지원기관 업무 협조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「아이돌봄 지원법」<sup>7)</sup>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, 광역지원센터 지정 관련 세부기준·절차 규정을 위한 시행령·규칙은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.
-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연구용역 분석 결과와 세부기준·절차 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의 사무가 중단 없이 현행 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일시 연장<sup>8)</sup>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---

7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0조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 ① 시·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(이하 “광역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(시행일 : 2022.1.1.)

8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#### 4 종합 검토 의견

-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다만, 개정된 「아이돌봄 지원법」<sup>9)</sup>시행(2022.1.1.)에 따라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되고 집중되어 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아이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서비스 전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음.

---

9) 제10조의4(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) 신설 관련 주요내용

- 시·도지사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
-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주체를 시·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“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”은 아이돌보미의 현황분석,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돌봄서비스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기관임.
- 나.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3년(2022.1.1.~2024.12.31.)
-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 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
    -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(여성가족부 지침, 광역거점기관)

○ 추진 필요성

-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돌보미 전문교육 지원, 현황관리 및 노무상담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라. 위탁사무

-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및 점검 등
- 서울시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원
- 아이돌보미 교육 관련 업무지원
-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
- 사업운영실적 분기별 중간점검 분석보고서 작성·제출
-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참여
- 평가하위 10% 기관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
-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마. 위탁사무 개요

- 운영목적 :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관할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분석·조정·서비스 질 관리
- 운영방법 :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위탁
- 시설규모 : 기존 사무실 등 공동 활용
- 인력배치 : 7명(광역거점 3명, 모니터링단 4명)
- 자격요건
  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준함
    - ※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2급 이상 등 아동양육지원 사업 분야 학사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
  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으로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자 우대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320,105천원('21년 기준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, 방과후 서비스,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.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지원)
 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, 제6조 제1호 및 제9호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지정주(☎2133-4812)